

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| | |
|----------|----|
| 의안 번호 | 49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199 . 2. .
제 출 자 : 영 주 시 장

1. 개정이유

행정규제완화 지침에 의거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,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직장급고가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 첨부하는 인감계 및 판매 종사원의 인적 사항과 이사장이 산하 직장급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 첨부하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 첨부규정을 삭제함 (안 제10조 제2항)
- 나.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 변경시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신청하던 기간을 삭제하고, 승인을 받던 것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(안 제12조 제1항)
- 다.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정 신청하던 기간을 삭제함(안 제15조)
- 라.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때 판매인 또는 관계인이 신고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것을 제12조와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 (안 제16조 제1호)
- 마. 관련 서식을 정비·보완함(안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8호서식 및 부표중 판매인 지정신청 절차)

3. 개정조례(안) : 덧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덧붙임

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

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2조 제1항중 “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”를 삭제하고, “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”를 “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중 “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”를 삭제한다.

제16조중 제1호를 삭제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중 “생년월일” 및 “신원증명서”를 각각 삭제한다.

[별지 제8호서식] 중 “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”를 “신청합니다”로 한다.

[부표] 판매인 지정 신청절차중 “신원증명서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【영주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(안)】

| 현 | 행 | 개 | 정 | 안 |
|---|---|--|--|--|
| <p>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<생략></p> <p>② 직장급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[별지 제1호서식]에 의한 신청서에 직장급고이사장,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 복지회회장(이하 "이사장"이라 한다) 인감계와 판매종사원의 인적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, 이사장이 산하 직장급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</p> <p>③ <생략></p> | <p>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삭제></p> | <p>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삭제></p> | <p>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삭제></p> | <p>제10조(판매인의 지정신청) ① <현행과 같음></p> <p>② <삭제></p> |
| <p>제12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</p> <p>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[별지 제8호서식]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| <p>제12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</p> <p>①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[별지 제8호서식]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| <p>제12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</p> <p>①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| <p>제12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</p> <p>①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| <p>제12조(판매인의 명의, 위치변경, 판매폐지)</p> <p>①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<현행과 같음></p> |
| <p>제15조(판매인의 승계)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5조(판매인의 승계)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5조(판매인의 승계) -----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</p> | <p>제15조(판매인의 승계) -----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</p> | <p>제15조(판매인의 승계) ----- ----- ----- <삭제> ----- -----</p> |
| <p>제16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[별지 제9호서식]에 의거 곧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판매인의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 때</p> <p>2 ~ 4 <생략></p> | <p>제16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판매인이나 기타 관계자는 [별지 제9호서식]에 의거 곧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판매인의 판매장소(주소지)를 변경하였을 때</p> <p>2 ~ 4 <생략></p> | <p>제16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1. <삭제></p> <p>2 ~ 4 <현행과 같음></p> | <p>제16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1. <삭제></p> <p>2 ~ 4 <현행과 같음></p> | <p>제16조(판매 또는 관계인의 신고) ----- ----- ----- ----- 1. <삭제></p> <p>2 ~ 4 <현행과 같음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[별지 제1호 서식]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증 생년월일</p> <p>3. 첨부서류 : 인감계, <u>신원증명서</u> 및 위치도</p> <p>[별지 제8호 서식] 수입증지판매인명의(위치)변경신청서증 위 사유에 의거 판매인의 명의(위치)를 변경코자 <u>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u></p> <p>[부표] 판매인 지정 신청절차증 <u>신원증명서</u></p> | <p>[별지 제1호 서식] 수입증지판매인지정신청서증 <u><삭제></u></p> <p>3. ----- <u><삭제></u> -----</p> <p>[별지 제8호 서식] 수입증지판매인명의(위치)변경신청서증 ----- -----<u>신청합니다.</u></p> <p>[부표] 판매인 지정 신청절차증 <u><삭제></u></p> |

“관인생략”

영 주 시

| |
|--|
| 후 750-701 경북 영주시 휴천2동 470 / 전화(0572) 639-6055 / FAX 639-6059 기획감사담당관실, 담당관 김도형, 정책기획담당 권혁태, 담당자 이기탁 문서번호 기감 05090 - 1341 |
|--|

시행일자 1998.12. 5.

발음 세무과장

참조

제목 경상북도 자치법규집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 대상사무 통보

1. 도 기획 11250- 629 ('98. 11. 24) 이첩입니다.
2. 경상북도자치법규집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도 자치법규집 개정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관련규정 개·폐시 우리시 관련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조속히 (1개월 이내) 정비하기 바랍니다.

붙임 경상북도 조례·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 1부 끝.

영 주 시 장

條例·規則 등에 根據한 行政規制 整備計劃

1998. 11

慶 尚 北 道

(제35회 - 총무 제2차 부록)

| 인번 | 규제시무명 및 규제내용 | 근거규정 | 정비개회 | | | 시유 | 추진일정 |
|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| 배지 | 원회 | 준치 | | |
| 22 | 수입증지 판매인 길기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급치신자, 한정치신자 · 폐신자로 복권되지 않는지 · 급고이상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는지 ·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| 경상북도수입증지 조례제8조 | | | ○ | 수입증지 효율적 관리 도모 | |
| 23 | 판매인 지정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직장급고기 판매인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 직장급고 어시성, 직원공제회장 등 직원복지회 인감개의 판매종사원 인적사항 첨부 | 경상북도수입증지 조례제9조제1항 | | | ○ | 판매종사원 인적 사항 첨부를 식재 하여 원화 | '99 하반기 |
| 24 |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, 판매배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신청하여 승인 | 경상북도수입증지 조례제11조 | | | ○ | 기간 조정 등 원화 가능한 부분은 원화 | " |
| 25 | 중지판매 위치 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민원실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| 경상북도수입증지 조례제12조 | | | ○ | 반드시 민원실내 설치는 부당 | " |
| 26 | 판매인의 승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내 신청 | 경상북도수입증지 조례제14조 | | | ○ | 기간 조정 등 | " |
| 27 | 중지판매인 또는 판매인 신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판매인 판매장소 변경 · 판매인 사망 ·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 하였거나 주소가 불명 · 판매인이 무능력자 | 경상북도수입증지 조례제15조 | | | ○ | 기간조정 등 원화 가능한 부분 원화 | " |